

한경훈 / 3월 / 기초GS+ / 15회

수강번호	문제 1	문제 2	문제 3	문제 4	문항 총점	석차	상위%	가독성 평점	응시인원
516087	16	14	18	11	59	1	1.72%	5	58
514114	16	12	18	6	52	2	3.45%	5	
515450	16	10	16	10	52	2	3.45%	5	
515461	14	13	15	8	50	4	6.90%	5	
515446	18	12	10	8	48	5	8.62%	5	
515515	17	14	10	7	48	5	8.62%	5	
515518	16	13	11	8	48	5	8.62%	5	
515366	14	12	11	10	47	8	13.79%	5	
515581	18	13	12	4	47	8	13.79%	5	
515621	13	15	13	6	47	8	13.79%	5	
515913	18	10	13	6	47	8	13.79%	5	
515601	15	12	14	5	46	12	20.69%	4	
515682	16	13	6	11	46	12	20.69%	5	
515585	13	13	14	5	45	14	24.14%	5	
515612	16	10	9	10	45	14	24.14%	4	
516191	16	13	6	8	43	16	27.59%	5	
515370	13	13	11	5	42	17	29.31%	4	
515457	14	13	14	1	42	17	29.31%	5	
515844	19	12	11	0	42	17	29.31%	4	
515429	13	14	10	4	41	20	34.48%	6	
515462	15	15	11	0	41	20	34.48%	5	
515393	15	11	10	4	40	22	37.93%	6	
515491	16	6	11	7	40	22	37.93%	5	
515578	19	13	8	0	40	22	37.93%	6	
515631	17	12	10	0	39	25	43.10%	4	
516189	13	12	12	2	39	25	43.10%	4	
515459	14	9	10	5	38	27	46.55%	4	
515580	18	11	7	2	38	27	46.55%	4	
515665	16	10	10	2	38	27	46.55%	5	
516036	13	11	12	2	38	27	46.55%	5	
515652	12	11	11	3	37	31	53.45%	5	
518911	18	12	5	2	37	31	53.45%	5	
515615	13	11	11	1	36	33	56.90%	5	
514532	15	10	9	1	35	34	58.62%	6	
515492	13	10	8	3	34	35	60.34%	4	
515583	14	7	9	4	34	35	60.34%	4	
515409	16	10	6	1	33	37	63.79%	5	
515423	10	15	8	0	33	37	63.79%	6	
515444	16	11	6	0	33	37	63.79%	5	
515456	13	7	8	5	33	37	63.79%	4	
515729	10	11	9	3	33	37	63.79%	4	
515447	13	10	8	1	32	42	72.41%	4	
515466	14	12	6	0	32	42	72.41%	5	
515577	9	10	9	4	32	42	72.41%	5	
515594	9	12	11	0	32	42	72.41%	5	
515675	9	12	10	1	32	42	72.41%	5	
515355	15	7	7	2	31	47	81.03%	5	
515482	15	11	5	0	31	47	81.03%	6	
515490	10	11	10	0	31	47	81.03%	4	
515586	9	13	9	0	31	47	81.03%	5	
515520	14	9	7	0	30	51	87.93%	5	
515588	7	9	10	2	28	52	89.66%	5	
515669	12	11	5	0	28	52	89.66%	5	
515479	12	10	4	1	27	54	93.10%	4	
519891	11	11	2	3	27	54	93.10%	5	
515440	12	9	4	1	26	56	96.55%	5	
515584	6	11	5	0	22	57	98.28%	5	
515690	17	0	0	0	17	58	100.00%	5	

<p>한경훈/3월/기초GS Plus/15회/1번</p>	<p>채점자</p>
	<p>김시연</p>
<p>1. 전반적인 총평</p> <p>데이터팩토리 사안을 토대로 한 문제였습니다.</p> <p>해당 판례는 최근 몇 개년 동안 자주 출제되는 중요 사안이었으니, 꼭 판례 원문을 한 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p> <p>2. 설문별 채점평 및 주의할 점</p> <p>(1) 설문 1</p> <p>권리 대 권리 간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적법성은 다들 잘 써주셨습니다. 다만, 해당 사안의 경우 양 표장이 정확하게 동일하지 않다는 점이 문제가 되므로, 양 표장의 동일성 여부를 꼭 판단해주셔야 합니다. 이를 놓치신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p> <p>이와 별개로, 문제에서 두 개 이상의 표장이 등장하는데 양 표장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라면, 꼭 유사 판단을 해주세요!</p> <p>(2) 설문(2)</p> <p>침해판단 문제였습니다.</p> <p>해당 설문에 정확한 답을 내리기 위해서는 상표의 유사 여부, 상표적 사용 여부, 정당권원 여부, 권리남용이라는 논점들이 들어가야 합니다.</p> <p>특히, 상표법에서 침해를 판단하는 문제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와도 같습니다. 위 기재된 사항은 상표권의 침해판단을 위해 기본적으로 확인해주셔야 하는 사항들이니 꼭 기억해주세요.</p> <p>또한, 이번 사안의 경우 갑의 침해여부를 묻고 있는데, 갑은 선 등록 권리자입니다. 몇몇 분들이 당연히 갑이 후 등록 권리자일 것이라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주셨습니다. 문제는 항상 꼼꼼하게 읽어주세요.</p>	

(3) 설문 3

무효 사유 있는 상표권에 대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판 청구이익을 부정하는지 긍정하는지 적어주시면 됩니다.

해당 논점을 놓치신 분들이 꽤 계셨습니다. 이번기회에 해당 판례를 정리해서 기억해주세요.

3. 소결

통배점 문제가 없고, 각각 10점 정도로 적당한 분량만 채워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다들 적당한 분량으로 잘 작성해주셨습니다.

다만, 세부 논점들을 놓치신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GS에서 놓친 논점이 있다면 꼭 확인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주세요. 해당 년도에 시험장에 들어가는 모든 수험생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논점이라고 생각하시고, 혼자만 놓치는 일이 없게 꼭 대비해주세요.

<p>한경훈/3월/기초GS Plus/15회/2번</p>	<p>채점자</p>
	<p>김시연</p>
<p>1. 전반적인 총평</p> <p>심사, 심판, 소송까지 모든 절차를 아우르는 문제였습니다.</p> <p>각 설문의 배점이 그리 높지 않아서 다들 적절한 분량을 잘 채워주셨습니다. 다만, 심판/소송 파트가 항상 그렇듯이 많은 분들이 꼼꼼하게 대비하지는 못하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p> <p>2. 설문별 채점평 및 주의할 점</p> <p>(1) 설문 1</p> <p>결정계 심판에 대한 소송에서의 심리범위에 관하여 판례의 태도를 꼭 적어주셔야 합니다.</p> <p>특허법에서, 몇 안 되는 학설 기재가 필요한 논점입니다. 제한설과 무제한설에 대해서는 간략하게라도 언급해 주세요.</p> <p>또한, 심사 단계에서 의견서 제출기회를 부여한 경우라면, 이를 거절결정의 이유로 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심결취소소송에서는 심리 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심판 절차에서는 심사단계에서 해당 사유를 거절이유로 삼지 않은 경우, 이를 심결의 이유로 할 수 없다는 것과 혼동할 수 있으니 주의해 주세요.</p> <p>심판 절차와 소송절차에서의 취급이 다르다는 점 주의해주세요.</p> <p>(2) 설문 2</p> <p>전반적으로 다 잘 써주셨습니다.</p> <p>제소기간 30일과 관련하여서는 설문 1이나, 설문 2에 기재해주시면 다 점수를 부여하였습니다.</p>	

(3) 설문 3

배점이 작은 만큼 요점만 간략하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다만, 배점이 작다고 하여 판례를 아예 생략하시는 것보다는 관련 판례는 꼭 적정 분량으로 기재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소결

이번 회차는 비교적 배점이 높지 않게 출제되었는데 배점 분량을 초과하여 너무 많이 적어주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물론 많이 적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저도 실제 시험에서는 적다보니 18~20페이지 정도를 적었습니다.

다만, 시간 배분에 정말 많이 신경써주셔야 합니다. 시간에 쫓기게 되어 뒷 문제를 날리는 것이 점수 획득에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답안 작성하실 때, 시간 확인하시는 연습을 꼭 같이 해주세요.

<p>한경훈/3월/기초GS Plus/15회/3,4번</p>	<p>채점자</p>
	<p>강경민</p>
<p>1. 문제 3</p> <p>입체상표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논점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채 판례만 나열한 답안이 매우 많았습니다.</p> <p>입체 상표 문제가 나올 경우, 입체적 형상만의 등록가부를 묻는 것인지, 입체적 형상과 다른 표장이 결합한 상표의 등록가부를 묻는 것인지를 반드시 먼저 구분한 후 그에 따라 사안포섭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p> <p>(1) 설문 1</p> <p>입체상표를 비롯한 비 전형 상표 출원 절차에 관해서는 기본적인 출원서 기재사항 외에도 “①상표 유형, ②견본, ③상표에 관한 설명” 3가지를 빠트리지 않고 답안에 기재 할 수 있도록 공부해주세요.</p> <p>33조 2항 사안포섭 시 ‘입체적 형상 자체’가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했음을 설명하지 못한 경우 판례와 사안에 대한 이해도가 다소 떨어져 보였습니다.</p> <p>(2) 설문 2</p> <p>설문 1과 비교하여, 식별력 있는 다른 표장의 결합 자체만으로 33조 1항 3호 및 34조 1항 15호가 문제되지 않음을 구분해주세요.</p>	

2. 문제 4

(1) 설문 1

창작물 수록 상품 문제의 경우 알아채지 못하면 완전히 논점 이탈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혹시 실수하신 분들은 꼭 오답해주세요.

(2) 설문 2

캐릭터 혹은 캐릭터 명칭에 관한 문제가 나올 경우, <3조 1항, 34조 1항 4호, 34조 1항 9호 내지 13호, 34조 1항 12호 후단 순수한 수요자 기만>의 순서로 검토하는 것이 누락 없이 답안을 균형 있게 작성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강사님 답안 참고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주세요.

특히 12호의 경우, 아직 캐릭터 상품화가 이루어지지 않음에도 순수한 수요자기만의 유형이 아닌 출처 오인 혼동으로 포섭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구분해주세요.

[문제 1]

I. 실문 (1)

1. 각국의 권리범위 학인성판 의의 및 (취지) 실시한 취지

상표권자가 권리범위 속부인한 공적 학인 구하는 실태로 인하여 분쟁의 예방 및 신속한 종결을 위한 취지이다.

2. 학인대상표상과 실사용표상이 다른 경우 (취지)

학인대상표상과 실사용표상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 학인대상표상이 없거나 부경법하다. 하지만, 차이나는 부분이 부가적인 것이 동일하다면 양표상 동일성 인정. 학인의 여력이 있다

3. 사안의 차이

학인대상표상을 근사상표와 미각적 유사성 여부 차이가 있으나 이는 부가적 부분으로 양표상은 동일성 인정 학인의 이익 있어 적법하다.

4. 권리 대 권리 간 각각 권리범위 학인성판으로서 부경법한이여부

(1) 적법여부 (취지)

등록상표의 학인대상표상이 대한 권리범위 학인성판은 등록유효권과 이에서 등록의 권리 행사를 부인하는 결론 부경법하다.

(2) 등록상표의 학인대상표상의 범위 (취지)

등록상표의 학인대상표상은 등록상표의 동일한 상품 또는 사안상계상 동일한 상품을 포함한다.

(3) 학인대상표상이 등록상표가 다른 경우 (취지)

학인대상표상이 등록상표가 다른 경우 인정된다. 동일성과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등록상표의 동일하다고 본다.

II 사안의 경우

특정대상상품은 2 등록상품의 리믹스인도 차이 있으나 부가적 방법으로
등록시간 등록번호를 취미하고 있어 사권용념상 동일하여 상품도 기재사항
따라 동일함 있어. 권내대결의 간. 기록적 권내부(특정 상품권)로서
부가적 방법도

5. 소결 - 상품권 가치 예상

무의 상품권권은 부가적항목에 가치 심결 내려진다.

II 사안(2)

1. 상품권 권내 의미 및 재검정권리 (조 108조 (081호))

등록상품 및 리믹스상품의 유사범위에서 사용하는 경우 권내가
성립한다. 판단에 있어 상품가 유효한지, 상품권 사용인지,
정당권리 사용인지 항변 있는지 등을 판단한다

2. 상품권의 유사여부

(1) 유사판단 일반원칙 취지

양상품 리믹스한 상품 등은 전체적 개성적 이격적 관찰하여
리믹스상품 기재사항 및 일반수단과를 느끼는 리믹스인식기준으로 동일유사
상품사용시 출처의 미판등 영려 있도록 판단한다.

(2) 사안의 경우

"DATA FACTORY" 의 식별력이 크고 모티브가 해당하고. 모티브를
대변하였을 때 현상 동일. 관념 동일 해본은 유사상품사용시 수요자의
출처 혼동 영려 하는 위한 상품이다.

3. 상표권 사용인이 여부

무엇 '정품의 소프트웨어 개발업' 이 계속 사용해왔고 '무상판권'은
식별력이 있으므로 상표권 기능 발휘되어 상표권 사용 해당한다.

4. 상표권이 무효가 되는지 여부

(1) 상표권의 효력 (신출 89조)

상표권이란 지정상품 관하여 그 등록상품 사용 권리를 독점한다.

(2) 사안대처

무엇 '상표권 등록상품' 대한 권리자인지 무의 233조 3항 3호
제한되지 않는다.

5. 효력제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효력제한 사유는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6. 그 상표권 행사가 권리침해의 여부

Good

(1) 무효로 될 것 명백 권리가 아닌 권리행사 행위

무효행위라는 것이므로. 무효행위인 무효로 될 것 명백하게
특정 사정 없이 한 권리행사를 권리남용이 해당한다.

(2) 침해 논거

공통의 이익 부당취득 및 상표법 목적이 배기되고. 실질적 권리자
행위를 사이 행정 관행에 따름이다

(3) 사안

같은 선출권 선출권 상품의 유사한 상품을 유사상품이 출원
하여 34조 1항 1호 무효로 될 것 명백하므로 무언 권리남용행위 가능하다.

7. 결론



무엇을 침해의 책임을 지기 않는다.

6

III 서문 (3)

1. 소유권 침해의 책임 (침해의 책임)

이해관계인이 권리행위 목적 관한 동등한 권한을 가진 사람으로서 상대방에
반 반대 중립이 되어야 한다.

2. 권리 침해의 책임 (침해의 책임)

권리 침해는 소유권 침해의 책임은 상대방의 동등한 권한을
침해를 부인하지 않아 책임이다.

3. 상관행위 (침해의 책임)

(1) 상관행위 (침해의 책임)

동등한 권한을 가진 행위를 무권한 상태에서 다루어야 하고
대상에 대한 권한을 가진 권리행위자인 상태에서 무권한 인정되면
상관행위 기본권 깨뜨리고 무권행위 권한 가진 판단을 함으로써
부담을 지게 되므로 동등한 권한을 가진 행위로 부각된다 볼 수 없다.

(2) 상관행위 (침해의 책임)

무권행위 (침해의 책임) 상관이 없는 권리행위를 행할 수 없고
제과 그릇된 인식을 권리행위할 수 있고 상관이 없는 이유로 행하여
상관을 본인이 권도된 것. 상관행위 (침해의 책임) 부각된다 볼 수 없다
부각된다.

(3) 경우

권리 침해의 책임은 권리행위자가 본인인지는 아니냐 무권행위를 볼 수 없다



물건은 삼리이하로 하는 것은 무효한지라도, 복수기능 달린 것은
권리범위 밖인 삼리 이하의 권리는 변경시키든 상품법 기본규정이
내려있고, 그 예외의 문제 목격 범위가 한정, 삼리범위 제한하는 필요
있으므로 금강산이 타당하다.

4) 사안의 명

2 상품권이 > 3리 이상이면 무효사유가 있더라도
2 상품권이 권리범위 밖인 삼리 이하의 이익은 인정된다

4. 소견

무이 청구는 소극적 권리범위 한정을 적법하다.

[문제-2]

I 서론 (1)

1. 상표취소소송의 의미 취의 및 상표권리권의 (법 162)

상표 무효성 대위권이 상판 표시를 상표 대위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상표에 대한 것이 아니면 상표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2. 제외기간 도라 여부

(1) 제외기간 (법 162 3항)

상표취소의 소는 상표권은 권리 등본 송달 받은 날부터 30일 내
제기해야 한다

(2) 사안

사안의 경우 24.1.2 상표등본 송달받은 30일 내인 24.1.20에
소를 제기한 적법하다.

3. 특허청의 새로운 제2항, 제5항

(1) 문제점

기술적기능을 설명하는 문구의 경우에도 제2항 제5항을 제1항과 같은
유사어나 설명의구로써 따라잡아 제2항 제5항을 설명하는 것으로서
제1항과야 하도록 문구된다.

(2) 권리제한

본문 규의 한 권리제한구로써 피로 A항상비항의 제1항의 당사자는
상관기능을 설명하는 문구의 경우에도 제2항 제5항을 설명하는 '무제한'과
상관기능을 설명하는 문구의 경우에도 제2항 제5항을 설명하는 문구 제1항은
하위구로써 설명하는 '제한'이 있다.

(3) 권리제한 설명 - 내용 상의비항의 제1항

~~제2항 제5항을 설명하는 문구의 경우에도 제2항 제5항을 설명하는~~ 특허청의 제2항
이항에서는 상사 상의관계의 문구의 경우에도 제2항 제5항을 설명하는 '무제한'과
제2항 제5항을 설명하는 문구의 경우에도 제2항 제5항을 설명하는 문구 제1항은
은 이를 상의관계로써 설명하는 문구의 경우에도 제2항 제5항을 설명하는
제2항 제5항을 설명하는 문구의 경우에도 제2항 제5항을 설명하는 문구 제1항은
제2항 제5항을 설명하는 문구의 경우에도 제2항 제5항을 설명하는 문구 제1항은
제2항 제5항을 설명하는 문구의 경우에도 제2항 제5항을 설명하는 문구 제1항은

(4) 결론

제2항 제5항은 신의 계약관계의 경우에도 제2항 제5항을 설명하는 문구 제1항은
상사 상의관계의 경우에도 제2항 제5항을 설명하는 문구 제1항은

4. 결론

제2항 제5항은 신의 계약관계의 경우에도 제2항 제5항을 설명하는 문구 제1항은

ㄱ. 상권리

1. 상권과 제정기간 도내의 출원변정인으로 한 경우

(1) 제정

상권의 효력은 그 상권과 권리를 승계한 특정승계인이 아니라 출원인으로 상권지속으로 유권적일 수 있다.

ㄴ. 4항

2. 제정기간 도내의 출원변정인으로 한 경우
2. 24.1.15 출원변정인 받았으므로 2은 소제기 가능 (방법)

(1) 제정

(1) 제정

출원인 으로부터 상권으로 권리를 양전한 특정승계인은 출원인 변정인을 하기 않은 상권지속은 2항항과 발명하기 양해서

특정승계인 제정기간 발명수단 상권이 대해 취득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 등 인정하리 아니므로 그 제정은 취소의 소는 부적법하다.

특정승계인 취득의 소를 제하여 출원인 변정인 인정한다. 변정인으로서

제정기간이 지난후 2은 제정기간 내 제정기간 취득의 소제기는

합당도 2.5이므로 취득의 소는 부적법하다. 마찬가지이다

(2) 상권의 제정

2. 24.1.11 소제기를 인정받아 2.5이 출원변정인인 것이어서

2은 소제기 유권적일 수 있어 부적법하다. 24.2.5이 출원변정인

인정받거나 2.5이 소제기는 2.5이 부적법하다. 마찬가지로 2.5이 부적법하다

(부적법)



III. 1문 (3)

1. 출원 취한 경우 (재사지)

상동등, 출원이 취한 경우 출원이 처음부터 있었으므로
보여 되므로 내지, 출원이 대한 개질결정 무효성일 일러면
상동취는 것은 아예 없고 상동취의 신는 부가법하게 된다.

2. 사안의 경우

무엇 상동성 계속를 출원을 취하하였으므로. 따라서
출원이 이유없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기므로 출원대항 개질결정
취하할 가부하결정 없기므로 무슨 상동취는 아예 없기 부가법하게
대항성은 소위취하결정 내지 것이다.

합성. 부정정통이야!

[문제-3]

I. 1문 (1)

1. 입계상동

(1) 의미상 차이

입계상동은 취하한 입계상동과 달리 개상이 기호·분리 등 다른
구분요소가 전하는 상동을 말한다

(2) 사안

무엇 취하한 입계상동과 달리 (상동1) 를 상동으로 출원하였으므로
입계상동으로 통칭한다.

2. 출원의 취하

(1) 재출원



출원서를 제출하고, 압제상품 특허 출원 내역은 5강이나 6강이든
 무슨 사안으로 상품권별 작성, 상품기. 대한 설명서 제출하거나 이에
 갈음하여 풍상안으로 설명 상품등록 출원서기 제출할 수 있다.

(2) 사안

무엇 압제상품 출원서 제출하고 견본을 5강이나 6강
 또는 4권으로 작성한다. 상품권을 제출하거나 출원서기
 2개가 제출해야 한다.

3 등록가능성

(1) 法 33조 1항 3호 기준

1) 法 33조 1항 3호 의미 파악하기

기술적동양 보충사용 방법으로는 존재할 표상인인된 상품은 거래상
 식별성 없거나 등록가능성이 없다 등록할 수 없다.

2) 압제적 유사 식별성 판단기준

거래되는 사항에서 동행기본적 형식 인정되나 거래된 때 형식
 수 있는 범위내 이를 변경하여도 불리하나 인정되는 것 아닌 것
 장사적거래 관습도-입하여 이득적인 행위는 상품의 장식적 인정으로 인정되는
 데 그럴별 출원내역 인정할 수 있는 것 알아서 식별성
 인정되지 않는다.

3) 사안의 경우

무엇 상품(은) 수인자들이 인증기관에서 볼 때 형식에만 인정될 뿐
 출원내역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아니어서 식별성 인정되지 않아
 33조 1항 3호 기준에 못미친다.

(2) 法 33조 1항 6호 제2항

(가) 1) 의미 및 취지

간단한 혹은 표방만으로 된 상품은 가치상동성변경과 표방경량성 없이 상품등록 받을 수 없다.

2) 사안

무색표는 간단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33조 1항 6호 해당안함.

(3) 法 34조 1항 15호 제2항

1) 의미 및 취지

상품권은 상품의 표방의 기능을 확보하기 꼭 필요한 입체적 형상만으로 된 상품은 등록받을 수 없다. 경쟁자들이 호도적 위문으로 경쟁을 위해서이.

2) 입체상품 판별기준 제1항

입체적 형상으로 된 상품이 크기상 해당상품의 그 상품 '계내시각에서' 유용되거나 이동가능한 대체적 형상 존재하리. 대체적 형상으로 상품 생산시에는 통상적인 것은 그와 비할 수 없되느니라. 입체적 형상으로 부터 상품 분배 가능 범위에 기술적 구위 발휘되는 것 아닌지 등 종합적 고려해야 함.

3) 사안의 경우

무) 입체적 형상 간단하리 볼 수 없기만 관련 사항에서 유용되거나 이동가능한 대체적 형상 다수 존재하면 혹은 형상으로 분배 가능 범위에 기술적 구위 발휘되리 없으므로 34조 1항 15호 해당하리 않는다.

(4) 33조 2항



1) 法 33조 2항 의미상 취지

3항 내지 7항 내지항하더라도 출원인 사용은 권리 사용이 아닌
 사본의 취득은 경우 의미상 충족됨

2) 입회자의 상상의 사용이 아닌 사본의 취득가복 (제1항)

상표등 기호·문자 도형등인 표상물이 함께 부속되는 사항으로 문자로
 상표등 입회자 해당 개체 사용이 아닌 사본의 취득 인정할 수 없음.
 부속되어 있는 표상의 의미·크기·색상·위치·인리 등 고려하여 그 상표의
 출처를 판정하는 기능 독립성 수반이므로 사용이 아닌 사본의 취득
 인정할 수 없음

3) 사본의 경우

무슨 무어 상표물을 같은 형태로 사용하거나 본과 동일 사용한 권리
 무어 상표물과 다른 표상물 사용이 아닌 입회자 해당 개체의
 사용이 아닌 사본의 취득 인정할 수 없음

(5) 소문

무어 상표물은 33조 1항 3항 기호·문자·도형·인리·색상·크기·위치
 의미상 취득가능하고 등록받을 수 있음

도 (원문)

1. 무어 상표물 의미상 취지 (法 117조)

이내란에 의한 무어 상표물 약어는 무어 상표물 인정할 수 없음

2. 法 33조 1항 3항 무어 상표물

(1) 입회자 해당 기호·문자·도형·인리·색상·크기·위치 인정할 수 없음

1) 식별성의 판단기준

특히 개 이상 구성부분 결합 여부인 결합상표는 상품구성 전체의 이해
 식별성이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

2) 판단의 근거

33조 1항 3호는 입체적 형상에 대한 식별성이 있는 기본 문과 단형 등 결합되어
 있는 상품인내 상품등록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입체적 형상인
 기준은 식별성 판단해야 한다는 상품법 제 33조 1항 3호는 식별성 없는
 입체형상 부차적인 그 형상이 미미하여 미미하므로 그러한 상품등록 허용한다고
 하여 식별성 없는 입체적 형상부분까지 상품권 원의 확장되어 다른 사실
 사용 ~~부~~ 개입하면 식별성 판단 반영 유무라고

(2) 사안의 경우

무인입체적형상은 식별성이 없고 함께 결합된 문과 'BOLD X delta'
 는 식별성이 있으므로 두어가 용이 인식하기 때문 전체로서 상품식별성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상품권은 관하여는 식별성이 있어 33조 1항 3호
 적용되지 않는다

3) 法 34조 1항 1호 무효사유

(1) 입체적 형상이 식별성이 없는 기본문과 결합된 경우 판단기준
 34조 1항 1호는 입체적 형상을 보통의 사용은 방법으로 표시한
 문과 같은 상품에 그 상품 등록의 기능 타당성을 위해 불가결로
 입체적 형상이 다른 식별성이 있는 경우 결합되어 있는 상품에 대하여는
 등록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2) 사안의 경우

무상권은 임의적 행상기 다른 사람과 같은 용이나 결함없이
임의적 행상(물)으로 된 상품이 아니어서 34조 1항 1호
무효사유 비정당 (안됨)

4. 소결

무상권은 33조 1항 3호 34조 1항 1호 등 무효사유 존재하지
않으면 무효사유가 없다 기각사유가 없다 것이다.

[문제-4]

I. 사건(1)

1. 法 33조 1항 3호 기각사유

(1) 의미 및 취지

기각사유는 보통으로 사정한 비정당한 행상인으로 된 상품은 등록받을 수 없다

(2) '창작성'을 등록사유로 기각하여 제1호 기각을 출원한 경우 취지

창작성을 등록사유로 기각당한 상품은 그 상품이 기각사유 등록 내용 등록 하거나

기각되는 경우 내지 원안수정이 이루어짐 기각사유 등록된 내용 보통 사용권서 방법으로

안하더라도 권리가 인정되면 33조 1항 3호 비정당

(3) 사실

무상권은 'LEGENDARY NAME'는 제명을 양식(이)로 쓰는

앞이나 수록된 내용 제명(이)로 쓰는 아니므로 33조 1항 3호 비정당

2. 法 34조 1항 1호 관련 기각사유

(1) 法 34조 1항 1호 관련 의미 및 취지

특정인(이)가 하는 상품은 등록 받을 수 없다.

(2) 표의인식용어 사용

이러한 등록상표가 기명상표 또는 호명상을 보통의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의인식용어인 상품 해명기 안함. 해당표의 표의인식용어 사용으로
불수용어 이 4년 후 상표가 34년 11월 22일 상품표의인식용어 사용
수용어 기명상표 사용 상품 해명기 불수용어.

(3) 사안 의의

'LEGENDARY LEAGUE' 는 표의인식용어 사용 표의인식용어 사용 해명기

3. ~~제 38조~~

(1) 관련 제 38조

상표를 등록한 디자인상표는 상표권으로서 인격상표인. 통로를 명백히
가해사기 같은 경우는 상품명 불명확한 것으로 제 38조 1항 위반이다

(2) 사안

무의 통로를 명백히 '권 대원인가능한 컴퓨터 게임 소프트웨어' 가
해명기인 본 해명기

4. 소견

무의 통로는 "LEGENDARY LEAGUE" 는 등록가능하다

II. (3) (1)

1. ~~이의신청의 의미 및 취지 (제 46조)~~

이의신청이란 권리상관된 출원인 개인이 출원인의 출원을
제출한 후 등록 절차상 문제 발생 시 출원인 또는 출원인 대리인

2. 행정처분 의의 및 취지. (제 49조)



문제 1. (이하 상표법은 법이라 한다)

I. 선택문 (1)

1. 권리범위확인심판 의의. 취지 - 법 12조

분쟁 사전 예방과 견직한 종결을 위해 확인대상표장이 ~~등록~~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공정으로 확인하는 심판이다.

2. ~~정규~~ 권리범위확인심판 계속 중 등록

(1) ~~정규~~ 적법여부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미등록상표인 확인대상표장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써, 등록상표인 확인대상표장에 대한 정규권리범위확인심판은 등록무효절차 이의에서 등록된 권리의 효력을 부인하는 결과가 되기 부적법하다.

(2) 사안의 경우

갑은 甲의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 이후 자신이 사용한 ~~갑~~ 표장에 관해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업은 자칭서비스로 하여 출원 후 등록받았으므로 甲의 심판청구는 권리대권리 정규권리범위확인심판에 해당한다.

~~정규~~

3. 기타 요건 검토

(1) 청구기간

	<p>甲의 상표권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동안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권 내 청구에 해당한다.</p>
(2)	<p>확인대상포장 특정 사안의 경우 Z의 확인대상포장을 적법하게 특정했으므로 <u>문제되지 않는다.</u></p>
(3)	<p>당사자 Z은 현재 자신의 포장을 데이터 복구업에 사용하고 있어 <u>Z의 당사자성도 문제되지 않는다.</u></p>
4.	<p>결론-예상 심결(각하) 甲이 청구한 심판은 권리대권리 징구권 권리범위 확인심판에 해당하여 <u>부적법 각하</u>해야 한다.</p>
II.	<p>심문 (2)</p>
1.	<p><u>침해</u> 의미 - 法 89조, 108조항 1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해 등록상표 사용한 권리를 독점한다.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범위 내의 사용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p>
2.	<p><u>침해성립요건</u> ① 유효한 상표권이 존재하고, ② 보호범위 내의 ③ 상표적 사용이며, ④ 침해자에게 정당권원이 없고, ⑤ 효력제한 사유가 없으며, ⑥ 권리남용에</p>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3. 상표 유사 판단

(1) ~~문자·도형 결합~~ 상표의 경우

문자나 도형이 결합된 상표의 경우 주로 문자부분으로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 거래실정이다.

(2) 요부 판단기준

① 두 이상의 문자나 도형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상표의 경우 독립하여 출제표시가능 수행 부분, 즉 요부가 있는 경우 정당한 전체관찰 유도를 위해 요부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사안의 경우

甲상표는 '데이터 팩토리'로 형성될 것이 일반적이고 甲상표의 문자부분이 식별력이 인정되고 乙의 사용상표 또한 '데이터팩토리'로 형성될 것이므로 두 상표는 서로 유사하다.

4. 상품 유사 판단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업과 메모리 부구입은 동일 업체가 영위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두 상품 사이 유사성이 인정된다.

5. 저촉 선출원 등록상표 존재 시

(1) 전합 취지

상표권자가 출원일 전 ~~출원~~ 출원·등록된 라인의

선출된 등록상표와 동일·유사 상표를 등록받고 선상표
권자의 동의 없이 동일·유사 상표에 사용한 경우
후 상표권자의 민·형사 효력이 제한되어 무효·상권
행위 여부 무관 선상표권에 대한 침해 책임이다.

(2) 권리

- ① 상표권자는 동일범위 전용권, 유사범위 금지권은 가지
고, ② 출원인 기준 상표 사이 우선순위가 결정되고,
③ 92조에 따라 신특허권 등과의 지축을 규율하는
경에서 상표권 사이 지축이도 동일 적용되어야 한다.

~~6. 권리~~

- ~~① 甲의 상표권이 유효하지 않음, ② Z는 甲상
표권자~~

6. 무효 명백 권리에 기한 권리 행사

①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고, ② 상표법 목적을 고려하
여 무효로 될 것이 명백한 경우 권리남용으로서
권리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

7. 결론

Z의 상표권에 기한 권리 행사는 Z 상표권은
무효가 될 것이 명백한 상표권에 기한 권리행
사로서 권리남용이 해당하여 甲은 Z 상표
권에 대한 침해책임을 면한다.



III. 심문 (3)

1. 권리대권의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권리대권리간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경우 인용심결이 내려지더라도 상대방 등록상표의 현행이 부인되는 결과가 되는 것이 아니므로 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

2. 사안의 경우

甲과 乙의 상표 모두 등록 상표로서 권리대
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이 해당하지만 사안의
경우와 같이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는 심
판청구로서 적법하다. <예>

문제 2.

I. 심문 (1)

1. 심결취소소송 의의 ~~소송~~ - 법 162조

심결의 위법성을 다투기 위해 심판 당사자는 심결에 대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 심결판치주의 - 법 162조 5항

심결취소소송은 심결에 대한 것이 아니면 제기할 수 없다.

3. 심리범위



(1) 문세정

심결추진소송은 변론주의, 심결제치주의를 따르고 있어 주장·입증 범위의 제한이 대해 없다.

(2) 학설

무제한설과 제한설이 대립된다.

(3) 쟁쟁

1) 당사자제

당사자는 심결에서 판단되지 않은 위법사유는 심판단계에서 주장·입증할 수 있고,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한 없이 심리·판단할 수 있다.

2) 결정제

재심부복심판청구 기각심결 취소소송제차에서 특허청장은 심사나 심판단계에서 의견서 기허를 부여한 사유 및 그와 주요 취지가 부합하는 사유를 주장할 수 있고, 법원은 이를 근거로 심리·판단할 수 있다.

(4) 검토

권리 재판권 보장과 소송경제를 위해 무제한설은 따르되 당사자 절차권 보장이 되지 않은 경우 새로운 사실 주장·입증은 제한함이 타당하다.

(5) 사안의 경우

甲은 심사절차에서 심사관으로부터 ~~법~~ 法34조항 9항의 거절이유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한 적이 있으므로 비록 거절결정의 이유가 되지 않았더라도 甲에게 절차권이 보장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4. 결론-예상 판결

특허법원은 甲의 출원이 法34조항 9항의 거절이유가 존재하므로 심판원의 심판이 정당하므로 기각판결을 내린 것이다.

II. 식은 (2)

1. 2024.1.15 출원인 변경신고한 경우

(1) 심판 계속 중 출원인 변경신고 - 원심제

심판 당사자로 표시된 구 권리자는 원고직권이 인정되나, 권리 승계인은 심판장 속행명령 기대를 가진 수 있는 지위에 해당하여 승계인이 직접 손을 제기할 수 있고 그 지기 시 구 권리자의 원고직권은 상실된다.

(2) 제2기공 도과 전 출원인변경신고

심판 효력은 심판 후 권의 특허승계인에게 미치므로 양수인의 소송 원고직권은 인정된다.

(3) 사안의 경우

甲이 2024.1.2 심결 등불을 송달받았고 그로부터 30일 내인 2024.1.15에 출원인변경신고를 하고 2024.1.17에 ~~소제기~~ 하였으므로 乙의 소제기는 부법하다.

2. 2024.1.17 소제기 후 2024.2.5 출원인변경신고

(1) 제소기간 도과 후 출원인 변경신고 - 취소제

특정소제인은 출원인변경신고 전 양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소제소송의 당사자여 해당하지 않아 그가 제기한 소는 부법하다. 제소기간 도과 후에 출원인변경신고 시 기간 내 소제기는 없는 것이므로 부법하기는 마찬가지다.

(2) 사안의 경우

출원인변경신고 전 乙의 소제기는 부법하고, 제소기간(30일) 도과 이후 출원인변경신고를 하였으므로 乙의 소제기는 부법하다.

III. 심문 (3)

1. 소의 이익의 의미 - 취소제

심결확정이 따른 법률상 불이익 우려가 있거나 심결취소를 회복한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것을 말한다.

2. 출원 취하한 경우 - (원칙)

출원이 취하된 경우 출원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므로 심판 취하는 ~~취하~~ 이익이 없�고
가 부당하게 된다.

3. 사안

상고심 계속 중 甲이 출원 취하했다면 심판 취하를 위한 이익이 없�려 대법원은 각하 판정을 내릴 것이다. <출>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

문제 3.

I. 실용 (1)

1. 입체상표 의의 취지

개사흔 실용 반영하여 3차원 입체적 형상이나 입체 형상이 다른 구성요소가 결합된 상표이다.

2. 출원절차

(1) 제출서류

1) 출원서 - 법 36조 1항

출원인 성명·주소, 입체상표, 지명상표, 상품류 기재 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상표권보

보장 아하 되면 또는 사인으로 상표 특징 충분히



나타내는 상표견별은 제출해야 한다.

3) 설명서

설명서나 포장 관련 설명은 종원서이 기재하여 제출할 수 있다.

(2) 흥결 시 취급

1) 상표 (출원 - 법 38조항)

전체적으로 하나의 입체상표로 인식되지 않는 경우 법 38조항 위반이다.

2) 정의규정 위반 - 법 22조항(는)

상표견별으로 제출된 입체적 형상이 그 규정 및 태양을 갖추지 못하면 법 22조항(는) 위반이다.

3. 등록가능성

(1) 식별력 판단

1) 판단기준 - 취사제

두개 이상 구성부분 결합 시 상표 구성 전체로 식별력 유무 판단한다.

2) 근거

결합상표 등록부가 규정이 없고, 입체적 형상만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규정도 없고, 식별력 없는 부분은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부당한 결과가 발생한 우려가 없다.

3) 입체적 형상만의 사용 식별력 취득 가능

상품 등에 다른 표장이 부착되는 경우 그 사실만으로 곧바로 식별력 취득을 부정할 수 없고 그 표장의 리관, 크기, 위치, 인지도 등을 고려하여 표장과 별도로 입체적 형상이 독립하여 출제표시 기능 수행 시 사용에 위한 식별력 취득 가능하다.

4) 사안의 경우

무은 등록결정 전에 甲의 상품 표지로서 식별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甲 상표1에 대해 식별력을 취득하였고, 甲 상표2는 甲 상표1이 다른 표장이 부착되어 그 전체로서 식별력이 인정된다.

(2) 기능성 판단

1) 입체적 형상 자체 판단기준

대체적 형상, 유무, 가늠적 우위 유무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2) 입체적 형상에 표장 결합 시 판단기준

법 34제1항 15호는 기능 확보에 불가결한 입체적 형상이 다른 식별력 있는 표장 결합 상표에 대해 등록불가하다고 규정하지 않는다.

3) 사안의 경우

甲 상표1은 인공 고관외용 볼 관련 ~~사~~ 시장에서

- 이미 유통되거나 대체적 형상이 다수 존재하므로
가능항반이 불가결한 형상이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甲 상표 1과 甲상표 2는 모두 식별력이 인정
되고 기능성 요건도 만족하므로 등록가능하다.

II. 서문 (2)

1. 법 제24조항 15호 의의. 취지

경쟁자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 상품 또는
포장 기능 항반이 꼭 필요한 형상, 생체 등으로 된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다.

2. 기능성 판단 시 고려 요건 - 심사기준

입체적 형상 등과 관련된 특허출원, 실용신안등록출
원, 특허권, 실용신안권 존재 여부, 실용적 이점이 대
한 광고, 설명 등 존재 여부, 대체 가능 형상의
유무, 대체 가능 형상의 생산 용이성 및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3. '만'으로 된 상표

실체는 기능 항반이 꼭 필요한 입체적 형상만
존재하는 경우에 적용되고 기능성 없는 부분과
결합된 경우라면 적용되지 않는다.

4. 압제상표 관련 쟁례

法 34조항 15호는 기능 확보에 불가결한 압제상표 형상이 다른 식별력 있는 구성 결합 시 등록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

5. 결사 여상-기각 심판

甲상표 2는 甲상표 1에 식별력 있는 표상이 결합된 상표로서 甲상표 2의 형상은 지정상품 관련 시장에서의 대체적 형상이 다수 존재하고, 실용 甲상표 1이 기능성 있는 상표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甲상표 2는 그에 식별력 있는 표상이 결합된 상표이므로 法 34조항 15호의 무효사유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2호 심판~~이 청구한 무효심판은 기각 심판이 내려질 것이다.

(일)

문제 4.

I. 식문 (1)

1. 法 38조항 1항 1호의 취지

심사 편의를 위해 상표등록출원하려는 자는 상품류 관계에 따라 류 이상 상품 지정하여 1상표마다 출원해야 한다.

2. ~~특정~~ 상품 용도 기재 관련

창작물이 수록된 디지털 상품의 경우 소프트웨어 관련 상품이므로 용도를 명확히 기재하지 않은 경우 상품명에 불명확하여 법 38조항 위반이다.

3. 사안의 경우

甲은 상품으로 '다운로드가능한 컴퓨터 게임 소프트웨어'라고 지칭하여 출원하여 그 용도를 명확히 기재한 경우에 해당한다.

4. 법 33조 ~~항~~ 2항 의의 취지

사용자·수요자 불편을 위해 출원 전 사용으로 식별력 취득한 상품은 등록 가능하다.

5. 사안의 경우

甲은 ~~출원 상품~~의 상표는 지칭상품 게임 소프트웨어와 관련하여 식별력이 약하여 독점권을 인정하기 어려운 상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지만 출원 전부터 사용하여 국내에서 전혀 없는 인기를 끌고 해당 게임을 온라인 상품으로 판매하여 큰 매출을 기록했으므로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이 인정된다.

6. 결론

甲의 출원 상품에 ~~출원~~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여 등록가능하다.

11. 심문 (2)

1.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호~~ 해당 ~~판례~~ ^{개별이유} 검토

(1) 법 34조 제1항 제2호 후단

지명 캐릭터와 동일한 상표를 출원하여 수요자
기반 영려가 있는 경우 법 34조 제1항 제2호 후단
이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직·간접적으로 경쟁사의
관련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품뿐 아니라 상
품화 가능성 높은 상품까지 포함하여 판단한다.

(2) 법 34조 제1항 제3호

상품간 관련관계는 넓게 보고 ~~부~~ 부재한 목적 유
무를 판단한다.

(3) 사안의 경우

甲은 甲 캐릭터에 대해 상품화 사업을 계획하
고 있는 뿐 실제 상품화 사업을 하지 않아
법 34조 제1항 제9호의 ~~개~~ 개별이유가 있다고 보
는 어렵지만, 상품화 가능성이 높은 인형의 甲
캐릭터와 동일 표장을 출원하여 수요자 기반
영려가 있는 법 34조 제1항 제2호 후단이 해당
하고, 甲 캐릭터 지명성이 판승하려는 부재한
목적도 인정되어 법 34조 제1항 제3호에도 해

당한다.

2. 정보제공 - ~~제49조~~ 49조

甲은 심판원이 제34조항 12호, 13호에 해당한다든 사실을 그 증거와 함께 제출하여 그의 출원을 기각시킬 수 있다.

3. 무효심판

만약 乙 출원이査定등록된 경우 甲은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4. ~~심판~~ 출원 취하 양도

~~출원~~ 기각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려 출원의 취하나 양도를 권유할 수 있다.

<끝>

- 이하 여백 -

수준이 높았습니까

※ 추가작성의 경우 []에 "계속"이라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